

수원지방법원 2021. 4. 22 선고 2020나63559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상우

피고,항소인 1. B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서울센트럴

담당변호사 김호룡

변론 종결 2021. 3. 18

판결선 고 2021. 4. 22

제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0. 3. 18. 선고 2018가단62964 판결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가.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 C와 D 사이에 평택시 E 대 471㎡ (이하 f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18. 5. 8. 체결된 매매계약을 165,621,444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8. 5. 8. 체결된 매매계약을 165,621,444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165,621,444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예비적 청구취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C와 D 사이 및 피고들 사이에 각 2018. 5. 8. 체결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피고 C는 D에게 수원지방법원 송탄등기소 2018. 5. 8. 접수 제1475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B은 D에게 수원지방법원 송탄등기소 2018. 5. 8. 접수 제1475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저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일부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3쪽 13행의 '말소되었다' 뒤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제1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토지는 각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액의 합계가

377,740,000원으로 이 사건 토지의 가액 288,723,000원을 초과하므로 제1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가 제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각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액의 합계가 333,740,000원 (= 256,000,000원 + 29,700,000원 + 48,040,000원)인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공동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수개의 부동산 중 일부가 처분된 경우 피담보채권액은 원칙적으로 민법 제368조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공동저당권의 목적으로 된 각 부동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공동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안분한 금액으로 보아야 하고(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다78234판결
참조), 앞서의 인정사실에다 갑 제1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각 근저당권을 말소하면서 지급한 123,101,556원 (= 44,680,423원 + 29,700,000원 +
60,486원 + 48,660,647원)이 이 사건 토지의 가액에 비례한 공동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안분한
금액임이 상당하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제1심 판결문 제7쪽 4행부터 7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D와 피고 C 사이에 2018. 5. 8. 체결된 제1매매계약은 원고의
피보전채권액 288,109,589원과 이 사건 토지의 공동담보가액 165,621,444원 (= 288,723,000-
123,101,556원) 중 적은 금액인 165,621,444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수익자와
전득자의 각 가액배상의무는 부진정연대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수익자인 피고 C와 전득자인
피고 B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65,621,444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제2매매계약의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위
각하부분을 제외한 원고의 나머지 주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하현국 판사 김선영 판사 김유성